2021년「대체교사 지원사업」11회기(11월) 신청안내

안녕하십니까?
보건복지부와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여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「대체교사 지원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보수교육, 결혼, 연차 계획이 있으신 선생님은 어린이집과 상의 후 필요한 날짜를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.
지원 후에는 신청 기간 조정이 어렵습니다.

Ⅰ. 공지사항

지원우선순위	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 지원) 〉 결혼 〉 연차 〉 긴급 지원 〉 유휴지원
지원기간	‣ 2021. 11. 1.(월) ~ 2021. 11. 30.(화) * 선착순지원 아님
신청기간	‣ 2021. 10. 1.(금) ~ 2021. 10. 10.(일)
미지원기간	‣ 없음.
배치확인	‣배치확인일 : 2021년 10월 15일 (금) 15:00시 이후 ※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며 배치 결과는 개별공지 하지 않습니다. ‣ 확인방법 : 보육통합시스템 상태 - '배치' : 배치됨, '신청' : 배치 안 됨

Ⅱ. 신청방법 및 기간안내

교육지원기간

11월 (11회기)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	1	2	3	4	5	6
7	8	9	10	11	12	13
14	15	16	17	18	19	20
21	22	23	24	25	26	27
28	29	30				

● 대체교사 지원 가능한 날짜

신청방법

■ 지원대상 :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특수교사), 교사겸직원장, 연장보육 전담교사, 야간연장 보육교사

※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경우 신청 전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.
※대표자, 보조교사등은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 사업 지침 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

메뉴보기 → 어린이집 운영 → 보육교직원 관리 → '대체교사'탭
→ 항목 선택(직무교육, 승급교육, 결혼, 연차, 예비군, 건강검진, 사후방문지원)
→ 휴가신청교사 →'11회기 클릭'→ 연차예정기간 입력 →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
→ 저장 클릭

■ **긴급지원(아동학대후속조치, 보육교사권익보호, 가족상, 질병(사고), 난임치료, 유산, 건강관리), 유휴지원시 수기신청서 작성하여 신청**
■ 보수교육, 직무교육의 경우 교육비 계산서 또는 이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.
■ '결혼' 선택 시 휴가기간 입력 후 증빙자료 삽입 (예: 청첩장, 웨딩홀계약서)
■ 가족상 및 긴급지원(담임교사 질병·사고) - 진단서 회신

안내사항

■ 본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.
■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■ 아래의 상황의 경우 양 기관의 확인 절차 후 지원 철회 및 향후 대체교사 지원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**어린이집에서 연가 사용,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**
- **지자체 대체교사와 이중지원 받은 경우**
- **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한 경우**
- **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**
- **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**

■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결혼·법정연가보장과 보수교육 참여시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을 보장해 주시고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무지시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.
■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침 사유 외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.
■ 기타 문의 사항은 043-533-0055(대체교사 관리자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기준

구분	우선순위	지원 사유	지원 일수	비고
상시	1	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 지원)	5일(최대 10일)	사전 신청
	2	연가(본인 결혼 우선 지원)	1~10일(최대10일)	
	3	예비군 훈련	훈련 기간	
		건강검진*	1일	
	4	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 지원	회당 1일	
긴급	최우선	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	기간 제한없음	수시 신청
		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		
	가족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	
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	
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일	
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
	본인 질병 등 사고	감염성 질환***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	1~5일(최대 10일)	
	모성보호**	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	1일(최대 3일)	
		유산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)	5일(최대 10일)	
		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	1일(최대 3일)	

* 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제33조,「국민건강보호법」시행령 제25조 제1항 :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
**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3(난임치료 휴가),「근로기준법」시행령 제43조(유산·사산휴가의 청구 등),「근로기준법」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,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
***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고 그 기간(3주~8주)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

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